

수의증권저축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2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제22조(약관의 변경 등) ① 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	약관변경시 공시·통지 의무 확대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 는 -----.	개별 통지(신·구대비표 포함)
③~⑤ (생략)	③~⑤ (현행과 같음)	